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7. 9 선고 2021가단1084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5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876,548원 및 그 중 2,638,793원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(이율 연 36.5%)이 D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, 2021. 1. 12.자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10,876,548원(그 중 대출원금 2,638,793원)에 이른다.

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0,876,548원 및 그 중 2,638,793원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6.5%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미옥